

업용, 법인 신·증설로 인한 중과세에 해당여부, 비과세·감면대상 재산에 대하여는 유예기간내에 사용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아울러 세무조사시 서류의 제출요구는 법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조사대상 법인의 관련 서류를 확보한 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되 과세관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의 요구는 지양하고 법인현황, 재산현황 등 사실관계의 확인위주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세무조사의 강화와 더불어 토지의 소유자 변동사항, 지목 변경사항, 비과세·감면분 변동사항, 과세누락 토지여부 대사 등과 건축물의 소유자 변동사항, 구조·용도 등 실태, 무허가 신·증·개축, 고급주택 등 중과세 대상 재산실태, 화재위험 건축물 사용실태, 비과세·감면, 과세누락된 건축물 조사 및 차량,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회원권, 시설물 등 소유자 변동사항, 과세누락, 구조변경 등을 일체조사하여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과세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 마. 지방세 감면규정 적용 철저 및 사후관리

금년도에는 지방세법 및 감면조례의 개정으로 감면률과 감면대상 등이 대폭적으로 축소 조정되어 철저한 적용이 필요하므로 각 시도에서는 중앙단위의 교육 및 자체교육·연찬 등을 강화하여 감면제도 조정에 따른 내용이 정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조합과 아울러 해당기관 등에도 개정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하여 기 감면받은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감면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고 미제출 법인 등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특별관리 하는 등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

#### 바. 지방세 비리방지대책 지속 강구

지방세 취약요소에 대하여 집중·반복 점검으로 비리유발의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